

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

「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8일

옥 천 군 수

1. 조례명 :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

2. 개정이유

- 미세먼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조문 개정(안 제2조제3호)

4. 개정근거

-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
-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

5. 의견제출

- 「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 : 환경과장)에게 전자우편,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화 : 043)730-3433, FAX : (043)731-2914

※ 전자우편(이메일) : heinkel17@korea.kr

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6. 붙임

-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“미세먼지 취약계층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.

가. 어린이·영유아·노인·임산부·호흡기질환자·심장질환자 등

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

나. 옥외 작업자,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

계층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“미세먼지 취약계층”이란 영유아, 어린이, 노약자,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“미세먼지 취약계층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어린이·영유아·노인·임산부·호흡기질환자·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나. 옥외 작업자,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 례 명 :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전 화 번 호 :

규 칙 안	의 건